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3

발의연월일: 2024. 6. 19.

발 의 자:김한규·조 국·허성무

장철민 • 이성윤 • 서미화

박희승 • 정준호 • 김영진

강유정 • 위성곤 • 민병덕

문대림 · 김종민 · 이건태

박정현 • 모경종 • 박홍배

강훈식 • 이재관 • 김동아

김원이 · 송재봉 · 김교흥

오세희 • 권향엽 • 허종식

임미애 · 서영석 · 박지혜

강준현 • 이원택 • 정진욱

의원(3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·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,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지속적인 대규모 시설투자를

통해 전력·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나라도 미국·중국·대만 등 주요국처럼 국가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산업기반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 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. 이 경우 지원금의 한도 등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제20조(특화단지 조성・운영	지	제20조(특화단지 조성・운영 지	
원) ①・② (생 략)	원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	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	
		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	
		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	
		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	
		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	
		또는 일부를 지원한다. 이 경우	
		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	
		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<u>③</u> ~ <u>⑥</u> (생 략)		$\underline{4} \sim \underline{7}$ (현행 제3항부터 제6	
		항까지와 같음)	